

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0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'94. 12. 22일 농어촌정비법과 '95. 6. 23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을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로 함.
- 나. 제1조 및 제2조중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함.
- 다. 제3조 및 제5조중 “토지개량계”를 “농지개량계”로,
- 라. 제3조중 “토지개량조합”을 “농지개량조합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덧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신.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- 마. 입법예고결과사본 : 덧붙임

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한다.

제3조(관리자의 선정)①항 “토지개량계”를“농지개량계”로하고, “토지개량조합”을 “농지개량조합”으로 한다.

제5조(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)②항 “토지개량계”를 “농지개량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
안	안
제1조(목적)..... <u>용수</u>	제1조(목적)..... <u>기반</u>
제2조(대상)..... <u>용수</u>	제2조(대상)..... <u>기반</u>
제3조(관리자의선정)①..... <u>토지</u> <u>토지</u>	제3조(관리자의선정)①..... <u>농지</u> <u>농지</u>
제5조(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)②..... <u>토지</u>	제5조(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)②..... <u>농지</u>